

국제 계약서 준비와 검토의 바람직한 방법

글 _ 변종원(거성통상 대표, 《기술수출 노하우 및 국제계약 실천사례》 저자)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기술수출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 계약의 유효일자에 대한 각 부문 의견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사례

구미의 H사는 중국 동관(東管)의 D사와 합자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H사의 변호사가 중국의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D사와 협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은 기술계약 금액이 크므로 중앙정부 승인시까지 계약 서명일로부터 약 4~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이를 검토한 H사의 각 부문 의견은 아래와 같다.

- ▶ 기술 부문: 대표께서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하라고 지시를 했으므로 납기의 단축을 위해서는 납기가 장기간이 필요한 설비의 발주, 토건 등의 설계업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왜 영업부서는 계약서에 서명이 되었는데도 프로젝트 진행을 계약이 유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프로젝트 일정 준수를 위해 설비발주, 토건설계를 위해 협력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협력업체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 영업 부문: 기술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D사로부터 착수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승인 전에는 불가능하다. 착수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계약승인까지 4~6개월, D사의 내부 결재 고려시 5~7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방법은 최소한 계약승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우선 집행에 필요한 금액의 입금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시점에 프로젝트의 진행이 급하여 협력업체와 계약하고 선수금이 지급된 후 계약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는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만일 우선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승인

되지 않는다면 착수금의 손실은 물론 협력업체들은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까지 요구할 것이다.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 ▶ 변호사: 계약의 승인은 상대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계약승인이 빨리 진행되도록 D사와 협력하여 노력은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계약이 반드시 승인된다는 것과 조기 승인되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프로젝트 납기단축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계약 착수금의 우선집행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분석

- ① 만일 변호사가 기술부문이나 영업부문에게 계약서 승인 후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승인기간을 모르는 기술부서는 계약서명이 되었으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순조롭게 계약이 승인된다면 다행인데 계약 승인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선집행 금액에 대한 손실은 모두 H사 책임이다.
- ② 위 내용을 H사의 기술, 영업, 변호사가 이미 공유하고 있을 경우 영업부문은 프로젝트 납기의 중요성에 대해 D사에게 설명하여 우선 착수금의 지급 또는 보장을 요구하게 되고 프로젝트 일정이 급하다고 D사가 판단하면 H사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므로 H사는 프로젝트 선집행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기술부문은 선집행 금액을 최소화할 것이고 변호사도 조기에 계약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의 의견차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된다. 계약의 각 항목에는 위와 같이 각 부문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문별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사례의 2와 같이 동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처하게 되면 이에 합당한 문장을 가진 계약서가 준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 문장 등은 변호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더라도 각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은 그 부문의 전문가에 의해 준비 검토되어야 한다. 이후 각 부문이 서로 상충되거나 연계되는 부문은 함께 협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국제변호사 : 계약의 전 부문을 준비, 검토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도 각 전문부문 즉, 합자, 기술수출, 특허, 재무, 소송 등의 부문으로 경험이 서로 다르므로 필요한 전문성에 합당하고 기술도입자의 국가법을 잘 알고 경험한 변호사라야 한다. 합자나 합병이나 기술수출의 경우 국제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기술 부문 : 각 기술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여야 한다. 기술 부문도 여러 분야로 구분되므로 이러한 각 부문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가 바람직하다.

기술수출 경험을 가진 우수한 기술자일수록 기술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 부문이 준비, 검토하여야 하는 계약항목은 ▶용어정의(Definition) ▶설비 등의 품질보증 ▶기술지원 ▶Guarantee ▶계약서의 첨부사항(설비 명세서, 기술지원 세부내용) 등이다.

기술 부문의 계약 내용에서 변호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문이 계약서의 첨부이다. 이 부분도 변호사에 의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영업 부문 : 영업은 기술수출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국제 비즈니스의 전문가여야 한다. 적정 가격의 판단, 국제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 무역 및 기술수출 경험, 상대국가와의 비즈니스 경험, 국제협상 경험 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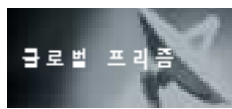
영업 부문이 준비, 검토하여야 하는 계약항목은 ▶용어정의(Definition) ▶물품공급 금액 및 대금지급 조건 ▶대금지급과 관련된 필요서류 ▶선적절차 및 포장 ▶기술지원 금액 및 대금지급 조건 ▶각종 발생 경비에 대한 책임 구분 ▶라이선스 및 로열티율 ▶로열티의 지급조건 ▶대금지연 지급시의 벌금 ▶대금지급에 따른 각종 세금 ▶의무(Obligation) ▶Guarantee 및 Claim ▶계약 발효일자 및 계약 기간 ▶계약서의 첨부내용(각 설비 단가 및 금액, 기술용역비의 세부 금액 등)이다.

위 3개 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각 전문지식을 최대한 공유한다면 각 전문항목과 계약서 각 항목이 연계되어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비즈니스는 매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관습,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각 부문의 국제 계약 및 전문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비즈니스와 계약을 준비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지식과 경험, 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우위의 비즈니스, 우위의 국제 계약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국제 비즈니스는 전문가들끼리 선의의 비즈니스 경쟁으로 인식하고 각 부문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계약서를 준비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거성통상 대표이자 중국 최고 법무법인 준허(君舍)의 한국 대표이다. 준허(君舍)에는 국제 변호사와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약 11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글로벌 프리즘

Global Prism

속, 만 배 빠른 인터넷 탄생

지난 4월 20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인터넷2 멤버 미팅'에서 초당 평균 6.25 기가비트의 속도로 거의 1만1,000km의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록이 세워졌다.

현재 가정용 초고속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거의 만 배나 빠른 속도. 이번 기록 갱신에 사용된 네트워크 링크는 미국 LA에서 스위스 제네바 사이에 구축된 것이다.

학계, 연구소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곳에서 큰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많은 그룹이 이미 연구소 및 실험실 등을 연결하는 독자 인터넷 망을 개발하고 있어, 과학자들은 대용량 데이터 공유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보출처 :** 국가정보원

디지털 TV 시장 '2008년까지 수직 상승' 전망

연구조사기관 인-스태트/MDR은 전세계 디지털 TV 시장이 올해 1700만 대에서 2008년 930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성장의 배경은 기존 TV들이 평면 패널 TV나 신채 부착형 초소형 TV, 프로젝션 TV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과 북미나 유럽, 일본 등지의 대형 TV 시장에서 디지털 튜너가 아날로그 튜너와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밖에 美 FCC의 권고안 역시 디지털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디지털 방송을 시도하는 방송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디지털 TV의 최대 시장은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정보출처 :** 해위벤처넷